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①이 계약특수조건은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이서비스(이하 “갑”이라 함)와 안전 관리대행기관(이하 “을”이라 함)간의 대행 계약내용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대행 계약내용의 구체적 실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업무) ①을이 수행할 대행 업무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업무와 기타 갑과 합의에 의하여 정한 업무로 한다.

②을의 직원은 갑과 합의하여 월 1회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자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한다.

제3조(대행기간) ①이 계약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동조 1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수탁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을은 새로운 수탁자가 결정될 때까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용역 업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을의 의무) 을과 을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한다.

1. 성실하게 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2. 갑에게 당해 사업장을 담당할 대행요원을 지정 통보한다.
3. 대행업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4. 매월 안전관리상태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결과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갑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5조(갑의 협조의무) ①갑은 을이 원활하게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한다.

1. 대행업무 수행 시 필요한 대행 업무관리자를 지정
2. 안전교육에 필요한 장소와 시간 제공
3. 대행요원의 사업장내 출입
4. 대행일시, 대행 장소, 대행업무내용에 대한 사업장내 홍보
5.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련 정보의 기록보존 및 제공
6. 기타 을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

②갑은 다음 경우에 이를 조속히 을에 통보한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였을 때

2. 직업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3. 대행업무와 관련된 재해예방 시설을 설치, 이전, 변경하거나 보호구를 구입할 때

제6조(대행수수료) ①대행수수료는 월 원(VAT포함)으로 한다.

②갑은 을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여야 한다. 단, 자금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연기할 수 있다.

③갑은 을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을로부터 징수할 금액(예: 과실 및 기타사유로 갑에게 해를 끼쳤을 때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지체상금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전에 을에게 통보한 후 당월 지급할 용역대가에서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 및 점검) 을은 안전관리점검을 사업장별로 월1회 이상 방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당해 월말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제8조(업무의 지도·감독) ①갑은 을의 용역업무 수행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갑은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이 계약에 의한 업무지시의 승낙 및 보고는 문서로써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관하여 갑에 대한 감독기관에 시정지시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9조(계약내용 변경)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계약해제)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이 계약상의 용역업무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용역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 기성부분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갑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해지) ①갑과 을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1개월 이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갑, 을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측이 배상의 책임을 진다. ②을 또는 그 종업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갑은 을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회사기밀을 누설하거나 회사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
 2. 이적행위를 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
 3. 갑의 문서 또는 물품을 부당하게 반출 또는 훼손한 때
 4. 고의·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이 하여 갑의 시설물 손괴하거나 사고를 야기하여 갑의 운영 관리상 지장을 초래한 때
 5. 이 계약에 의한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갑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
 6. 노사분규로 인하여 안전관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7. 종업원의 기술수준, 품위, 근무행태 등이 갑의 안전관리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8. 을이 이 계약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안전관리 수탁자로서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을은 갑이 안전관리업무 대체수단을 강구할 때까지 이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수탁업무에 대한 인계일 및 인계방법 등은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책임) 을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갑 또는 피해자에게 손실을 보상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갑, 을 쌍방이 협의 후 처리한다.

1.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역무 담당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화재, 폭발사고 등 불의의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갑 또는 제3자에게 신체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을 때
2. 을 또는 그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갑의 건물 또는 시설물에 손실을 주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3. 을 또는 그 종업원이 갑의 물품 또는 갑으로부터 대여 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13조(계약내용의 수정, 변경 및 추가계약)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수정 및 변경을 요하거나 추가사항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4조(일부무효) 이 계약의 일부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도 해당 조항을 제외한 이 계약의 나머지 조항들은 유효하다.

제15조(소의 관할) 이 계약에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6조(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준수) 갑과 을은 물품구매(용역 등)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17조(기타사항)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 하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회계예규」를 준용한다.

□ 안전관리업무 대상 사업장 현황

구 분		주 소	인원
서울청	IBK기업은행 본점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79	135
	IBK기업은행 파이낸스타워	서울특별시 종로구 을지로 82 (을지로2가)	91
	IBK기업은행 한남동 고객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 72	197
중부청	IBK기업은행 수지IT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99	84
	IBK기업은행 기흥연수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로 155번길 33	50(40)
대전청	IBK기업은행 충주연수원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화암양목길 12	68
합계			625

※IBK기업은행 기흥연수원의 경우,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중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50인으로 산정하여 견적함.

<건물별 인원현황>

(단위: 명)

IBK 본점		IBK 파이낸스타워		IBK 한남동 고객센터		IBK 수지IT센터		IBK 기흥연수원		IBK 충주연수원	
직종	인원	직종	인원	직종	인원	직종	인원	직종	인원	직종	인원
경비	45	경비	29	경비	26	경비	25	경비	9	경비	11
미화	39	미화	29	미화	14	미화	15	미화	11	미화	30
사무	1			사무	128	사무	1	사무	1	사무	1
시설	37	시설	22	시설	16	시설	30	시설	9	시설	22
조리	13	조리	11	조리	13	조리	13	조리	10	안내	4
총원	135	총원	91	총원	197	총원	84	총원	40(50)	총원	68